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20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곽상언·박지원·이기헌

강경숙 · 서미화 · 한창민

김재원 · 김종민 · 최기상
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 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「대한민국헌법」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,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2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중 "제헌절"을 "헌법의 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국경일의 종류) 국경일은	제2조(국경일의 종류)		
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<u>제헌절</u> : 7월 17일	2. <u>헌법의 날</u>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